법인사업자로 가는 체크리스트

1.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덜 내는 이유를 안다.  
 왜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덜 낼까? 개인이 소득을 벌면 개인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법인이 내는 세금을 법인소득세다. 각각 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이 있다.   
 일단 세율이 다르다.   
 # 소득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 법인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 3000억원 초과 | 655억 8천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월 100만원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 법인세율이 유리하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10%는 두 케이스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번 경우 바로 개인의 돈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번 돈은 바로 개인 돈이 아니다. 법인과 대표인 개인은 완전 별개다. 그래서 법인에서 나에게 따로 돈을 줘야한다. 급여 또는 배당. 보통 급여로 준다. 급여로 내게 줘야 진짜 개인의 돈이 된다. 근데 급여를 받으면 무엇을 내는가. 소득세를 낸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게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를 내더라도 법인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출에 대표 급여도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된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도 존재한다.

2.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법인에서 대표자 개인이 급여나 배당이 아니라 돈을 막 빼간 경우. 이럴 경우 법인이 대표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가지급금이라 한다.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자를 지출로 간주해준다. 따라서 법인세도 줄어든다. 근데 만약 대표가 돈을 막 썼다고 하면 이 대출금으로 돈을 쓴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대출금에서 대표자에게 보낸 돈의 크기만큼을 이자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결론은 법인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건드리지 말라는 게 세법의 핵심이다.

3. 법인이 개인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많다. 매출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세무조사 비율은 법인의 경우 96% 정도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1. 정기선정 - 정기적인 세금 성실도 분석, 4년 간 세무조사 받지 않음, 무작위 추출방식  
 2. 비정기선정 - 세금신고 등 하지 않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세 제보, 오류가 많은 세금신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법인이라도 중소법인이라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인의 탈을 쓴 개인사업자를 국세청은 잘 잡아낸다.

4. 핫한 사업에 제대로 투자해서 키워볼 생각이다.   
 법인은 개인보다 있어보인다(신용도), 대출 및 투자를 받기가 수월하다(자금조달), 법인하고 대표자 개인하고 책임이 분리된다(유한책임), 내가 망해도 법인은 안 망한다(지속가능성), 원활한 상속이 가능하다(가업승계)

5. 성실신고대상자거나 프리랜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비스업이면 5억원 이상 매출이면 성실신고대상자다.